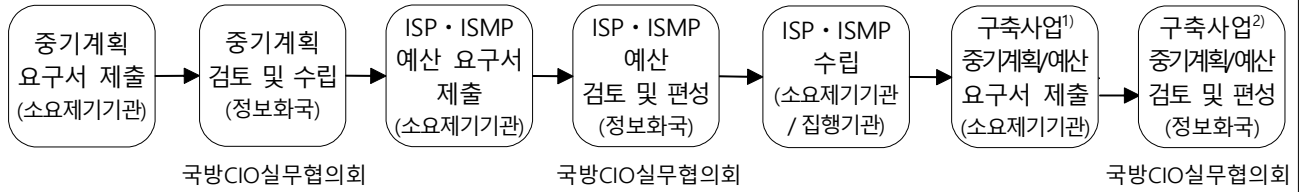


【별표 8】

## 국방정보화사업 업무 흐름도(정보시스템 구축사업)

□ 중기계획 및 예산편성



- 1) ISP·ISMP 최종 산출물을 검토하여 사업순기 및 예산을 조정하거나, 중기계획 및 예산 편성에서 제외할 수 있음
- 2) PMO 사업이 포함된 경우 ISP·ISMP 결과물을 참고하여 PMO 사업의 필요성 검토

□ 정보화전략계획(ISP)/정보시스템마스터플랜(ISMP) 수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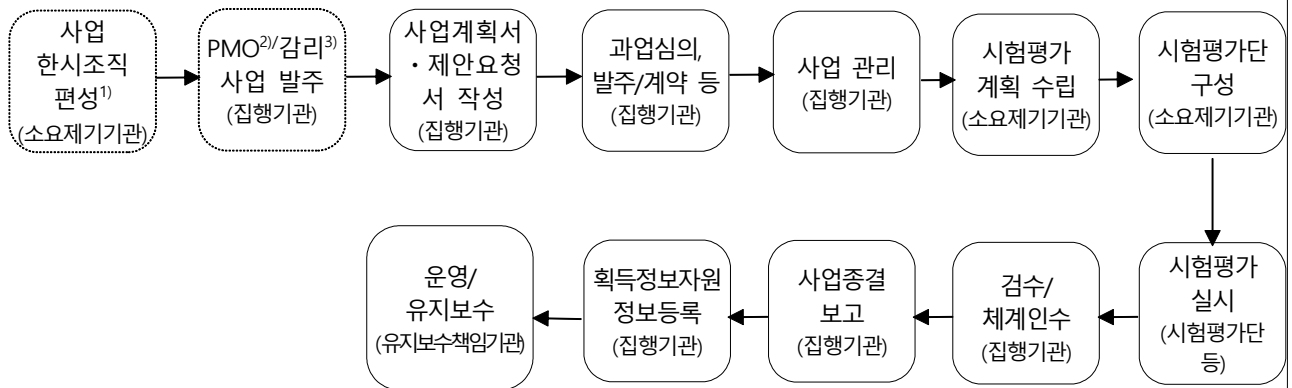
□ : 필요시에만 수행



- 1) 필요시 제40조제4항에 따라 ISP·ISMP 한시조직을 편성할 수 있으며, 편성 기준은 [별표 9] 국방정보화사업 한시조직 편성 기준 참고
- 2) 임의사항으로, 국방정보화국장이 PMO(전자정부법 제64조의2) 및 감리(같은 법 시행령 제71조)의 필요성을 인정한 사업에 한함

□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

□ : 필요시에만 수행



- 1) 필요시 제40조제4항에 따라 한시조직을 집행기관에 편성할 수 있으며, 사업 한시조직 편성 기준은 [별표 9] 국방정보화사업 한시조직 편성 기준 참고
- 2) 대국민 서비스 및 행정의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, 사업의 난이도가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사업 등이며, 중기계획 및 예산 편성 시 국방정보화국장이 PMO 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한 사업에 한함
- 3) 사업비 5억원 이상의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은 필수(전자정부법 시행령 제71조)